

SPC삼립

공정거래 정책



1. 목적

SPC삼립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,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. 공정거래 정책은(이하 "이 정책")은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(이하 "회사"라 한다)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추어 비즈니스 파트너,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2. 적용 범위

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됩니다. 따라서,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.

3. 정책의 내용

- 1)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,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(이하 "공정거래법규") 및 관련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2)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경쟁업체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리딩기업으로서의 공정경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합니다.
- 3)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, 충실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, 사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, 진실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니다.
- 4)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구성원 스스로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, SPC조직 내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합니다.
- 5)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나 관련 사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, 승인,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,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,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, 컴플라이언스 부서 또는 법무 또는 감사 담당부서에 보고하기로 합니다.

6)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,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7) 회사는 원칙적으로 내부 징계 절차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사내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합니다.

4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

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의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며, 그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.